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3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7. 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회부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20. 8. 25
- 회부일 : 2020. 8. 26 (의안번호 : 20-105)

2. 제출이유

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 해소 및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보조차 지원 및 표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(성인용 보행기 지원 규정 신설)안 제10조제3항

-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나. (구청장 표창 수여 규정 신설)안 제12조

-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노인공경 분위기를 형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2) 「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3)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4,725천원(취약계층 보행보조차)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7. 16. ~ 2020. 8. 5.
- 2) 부패영향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심사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고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‘성인용보행기 지원’ 규정 신설 (안 제10조제3항)
-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공경 분위기 형성을 위해 어버이날,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구청장 표창 수여 규정 신설 (안 제12조)

- 검토 종합결과 “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” 및 “어버이 날, 노인의 날에 구청장표창 수여” 규정은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어 이견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참고 자료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2조(표창) <u>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, 단체 또는 기관</u> 2. <u>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, 단체 또는 기관</u> 3. <u>모범노인 및 장수노인</u>

[관계 법령]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0. 7. 8] [법률 제17199호, 2020. 4. 7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7199호, 2020. 4. 7.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 3. 18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2449호, 2014. 3. 18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6. 9. 13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57호, 2016. 9. 13., 제정]

서울특별시 마포구(노인장애인과), 02-3153-885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경제적·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,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,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노인복지정책 수립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정책(이하 “노인복지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
2.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노인의 여가·문화·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
5.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
6.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건강증진 등)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
2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3.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
4.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
5.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
6. 자살, 우울증,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
7.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노인의 사회참여 지원)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

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
2. 노인 문화·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
3. 그 밖에 노인문화·평생교육·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8조(고용촉진 및 소득보장)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
2.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
3.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,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
4.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·보급,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)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주거·의료·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
2.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,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(이하 “취약계층 노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)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,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
2.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
3.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조례 제1057호, 2016. 9. 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